

議案番號	第303號
議決年月日	1995. 10. 20. (第38回)

議決事項	인안 가결
------	----------



## 固城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提出者	固城郡守
提出年月日	1995. 10. 9.

##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
----------	-----

제출년월일 : 1995. 10. 9.

제 출 자 : 고성군수

### □ 改正事由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 5. 16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 主要骨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조례 제3조)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 규정을 추가함(조례 제36조의 2)
  - .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조례 제38조의2)
-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조례 제38조의3)

○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함.

-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1급관사에 한함 → 1.2급 관사에 한함)

## □ 參考文

- 대통령령 제14646호 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 및 도회계 13330-1353(95. 7. 11)호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준칙

##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 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 단서중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담당부서와"를 "공유임야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공유재산매각승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36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조례 공포후 3월이내 그 소관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중요재산) 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 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p> <p>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제곱미 터이상</p> <p>㉔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 일지라도 제1호의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 으로 본다</p> <p>③ 중요재산의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p> <p>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p>	<p>제3조 (삭제)</p>

현행	개정 (안)
<p>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p> <p>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p> <p>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 도 당초에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 하고 있는 경우</p> <p>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p>	
<p>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u>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u> <u>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u> <u>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u> <u>한다.</u>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u>변경계획을 작성</u> <u>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시키지 아니할수 있다</p>	<p>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 ----- <u>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u> ----- ----- <u>공유</u> <u>재산의 취득 처분을</u> ----- ----- <u>변경계획을 작성</u> <u>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u>-----</p> <p>② (삭제)</p>

현행	개정 (안)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p> <p>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③ (삭제)</p> <p>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p> <p>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36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안)
<p>에는 잔여 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교성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 ----- ----- ----- ----- ----- -----</p>
<p>(신 설)</p>	<p>제38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기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54조 (1~4호 생략)</p> <p>5. 전기요금 (단, 1급관사에 한함)</p> <p>6. 생 략</p> <p>7. 수도요금 (단, 1급관사에 한함)</p> <p>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관사에 한함)</p>	<p>제54조 (1~4호 현행과 같음)</p> <p>5. 전기요금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p> <p>6. 현행과 같음</p> <p>7. 수도요금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p> <p>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p>